

교수연구년제 규정

1991. 8. 29. 제정

2021. 12. 17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들이 자유로운 연구시간을 확보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교의 학문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수연구년제(이하 “연구년제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 자격) ①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서 연구, 교육, 봉사 등 본교 교원으로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반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, 6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1.20., 2017.12.14., 2018.11.21.>

② 삭제 <2013.2.28.>

③ 삭제 <2017.12.14.>

④ 통역번역대학원 소속 교원, 비정년계열교원의 연구년 신청자격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3.2.28., 개정 2017.12.14.>

⑤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직기간은 제외한다. <신설 2013.2.28., 개정 2017.12.14.>

⑥ 연구년에서 복귀 후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기간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미달하는 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 <신설 2013.2.28.>

<개정 2013.11.20.>

제3조(연구년의 종류) ① 연구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년 연구년: 1년간 강의 및 기타 학교 업무를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게 하는 연구년
<개정 2005.10.10., 2017.12.14.>

2. 반년 연구년: 한 학기간 강의 및 기타 학교 업무를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게 하는 연구년

3. 삭제 <2017.12.14.>

4. 삭제 <2017.12.14.>

② 삭제 <2018.11.21.>

제4조(신청자격의 기산일) ① 연구년 신청에 필요한 근속기간은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되, 연구년을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. <개정 2018.11.21.>

② 삭제 <2018.11.21.>

③ 삭제 <2017.12.14.>

④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연구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연구년의 종료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. <신설 2005.10.10., 개정 2013.11.20., 2018.11.21.>

- ⑤ 연구년은 학기 단위로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연속해서 1년을 넘지 못한다. <신설 2018.11.21.>

제5조(처우) ① 연구년제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그 기간중에도 본교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며, 봉급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.

- ② 연구년 기간은 승진·승봉의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며, 재직년수에 통산한다.

<개정 1992.5.11.>

제6조(의무)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본교에 복귀하여야 하며, 복귀 후 2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장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연구결과 보고서(서식 제5호)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1.20., 2021.12.17.>

- ②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(휴직기간 제외)을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.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중에 지급받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1.20., 2017.12.14., 2019.12.10.>

- ③ 연구년의 기간 중에 있는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타고 출강을 하지 못한다. 단, 본 교강의에 한해 학기(계절학기 포함) 당 최대 3학점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강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. <개정 2013.2.28., 2018.11.21., 2019.12.10.>

- ④ 연구년 개시일 현재 계속 중인 논문지도와 연구관련 논문발표 등은 연구년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11.21.>

제7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연구년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교에 교수연구년제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, 교무처부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전공계열을 감안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은 위원장이 된다. <개정 2001.4.6.>

-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직능)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년 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
2.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.

제9조(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의기준 및 선정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년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한다.

1. 교육, 연구, 봉사 등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, 기타 업적의 총괄적 평가 <개정 2018.11.21.>
2. 연구계획서의 타당성 <개정 2005.10.10., 2018.11.21.>
3. 과거 연구년 수혜 현황 <개정 2018.11.21.>
4.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 <개정 2013.2.28., 2018.11.21.>

5.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상황 <신설 2018.11.21.>

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연구년 교수를 선정한다.

제10조(연구년 교원의 수) 연구년 교원의 수는 본교 전체 재직 교원의 7분의 1 이내로 하며, 각 전공(학과)의 최대 허용인원은 교원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3.2.28., 2018.11.21.>

제11조(신청서류 및 신청시기)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개시학기의 전전학기의 소정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 위원장(교무처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연구년 신청서(서식 제1호) 1 부 <개정 2018.11.21.>
2. 교육·연구 등 업적에 관한 보고서(서식 제2호) 1 부 <개정 2018.11.21.>
3. 연구계획서(서식 제3호) 1 부 <개정 2013.11.20., 2018.11.21., 2021.12.17.>
4.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(서식 제4호) 1 부 <개정 2013.2.28., 2018.11.21.>
5. 서약서(제6조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 1 부
<개정 2005.10.10.>

제12조(연구년 시기 변경) ① 보직,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정당한 사유로 승인된 연구년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연구년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해당교원이 소속된 전공(학과)의 다른 교원은 해당 연구년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로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교원을 대신하여 다른 교원이 연구년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의 경우 해당교원은 변경된 연구년 기간 동안 소속 전공(학과)의 연구년 허용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된다.

[본조신설 2013.2.28.]

제13조(강의담당교원의 대체) 연구년 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 학과의 다른 전임교원이 담당한다. 다만,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할 때에는 강사 또는 비전임교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2.28., 2019.12.10.>

제14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3.2.28.>

부 칙(1991. 8. 29 제정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5학년도부터 연구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한 교원이 학교에서 보수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구년제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 칙(1992. 5. 11 개정)

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교수연구년제 규정

부 칙(1994. 6. 23 개정)

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4. 6 개정)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0. 17 개정)
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5. 11 개정)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10. 10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2. 28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1. 20 개정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연구년을 개시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2014학년도 1학기 전에 연구년을 개시한 교원의 결과보고서는 구 규정 제6조제1항을 적용한다.

부 칙(2017. 12. 14. 개정)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 개시 연구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8. 11. 21. 개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는 2019학년도 2학기에 연구년을 신청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9. 12. 1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2. 17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호 서식 제3호는 2020학년도 2학기에 연구년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교원부터 적용한다.

(서식 제 1 호)

<개정 2005.10.10., 2018.11.21.>

연구년 신청서

신 청 인	소 속	대학(원) 학부 전공(학과)	성 명	
			직 위	
	임용일자	. . .	생년월일	19 . .
과거 연구년 수혜 사항	종 류	기 간		
		년 월 - 년 월		
		년 월 - 년 월		
신청연구년의 종류 및 기간	종 류	*예시: 반년 연구년, 1년 연구년 등	기 간	*예시: 년 월 - 년 월 등
외부기관의 지원 사항 (구체적으로 기술)				
연구년기간중 담당과목 등에 대한 의견	1. 담당과목: 2. 대강계획: 3. 논문지도 학생에 대한 계획:			
첨 부	1. 연구계획서 1 부 2. 기타 증빙서류(외부기관 지원의 근거서류 등/해당자에 한함) 1 부			

본교 교수연구년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: (인)

총 장 귀 하

비고: 1. 신청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 교원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교수연구년제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교육연구 등 업적에 관한 보고서

신 청 인	소 속		성 명	
	직 위		서 명	
1. 특별한 교육 실적(새로운 강의 개발, 교수법 적용 등)				
2. 연구업적 목록(제목, 연도, 게재학술지명)**				
3. 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 실적(학내 봉사(입학, 평가), 교내위촉, 특별수상 등)				
4. 기타 업적				

*교육연구 등 업적은 연구년을 처음 신청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부터, 이전에 연구년을 수혜받은 교원은 마지막 연구년 종료 후부터 신청일까지의 업적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**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(서식 제 3 호)

<개정 2005.10.10., 2018.11.21., 2021.12.17.>

연구계획서

신 청 인	소 속		성 명	
	직 위		서 명	
1. 연구과제명				
2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				
3. 연구일정 및 세부계획				
4. 기대되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				
5. 기타 참고사항				

비 고: 연구년제의 적용을 받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(서식 제 4 호)

<개정 2013.2.28., 2018.11.21.>

의 견 서

신 청 인	소 속		성 명	
	직 위		생년월일	
신청연구년의 종류 및 기간	종 류		기 간	
○ ○ 대 학 (원) 장 (서명)				

* 의과대학 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 및 의료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.

(서식 제 5 호)

<개정 2005.10.10.>

연구결과 보고서

소 속 :	직 위 :	성 명 :
연구년 종류 :	연구년 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	
기간 중 외부 지원 사항	지원 기관 :	
	지원 내용 :	
1. 연구 과제명 : 공동 연구자 : 연구기관(주소) :		
2. 연구 결과 요약(연구계획서 내용과 상이 시 사유서 첨부)		
3.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(발표(예정)기관 및 발표(예정) 학술지 포함)		
4. 연구년 기간 중의 기타 활동 요약(외부기관 방문, 공동 연구, 학회참석 등 상세히 기술)		
5. 건의 사항		

(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)